

大山都市計劃施設(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에 대한意見要求의件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5. 6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5. 18
- 라. 上程日字 : 1999. 5. 25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都市建築課長 朴景求)

가. 提案理由

-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을 이용 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장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는 서산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어, 운반처리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민가가 적고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피해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주) 인접 지역을 선정 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조성과 관련 도시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위                    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붙임 도면과 같음)

○ 도시계획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 결 정 내 용 : 신설 1개소(면적 : 86,469㎡)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동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전에 도시계획입안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
-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이 포화 되어 서산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원거리 운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하는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 화학(주) 인접지역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고, 민가가 적은편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상 사업인만큼 사업시행전에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 하는등 완벽한 시설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 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委員會意見案 : 별첨

#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 ■ 의견요구현황

-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 도시계획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 결정내용 : 신설 1개소(면적 : 86,469㎡)

## ■ 위원회의견

-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안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보나,
- 다만,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설설치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등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변의 식생이 양호한 소나무등을 최대한 존치하여 보호수림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것임.

1999. 5. 25.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위 원 장



의안 번호	제 63 호
의결년월일	1999. 5. 26. (제 29 회)

## 대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 출 년월일	1999. 5. 6

# 대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99. 5. 6.

제 출 자 : 서산시장

## □ 제안이유

-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을 이용 처리하였으나, 매립장의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는 서산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어, 이송 처리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민가가 적고 구릉지대로 인근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피해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인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주)인접지역을 선정 대산지역 및 지곡·성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조성계획과 관련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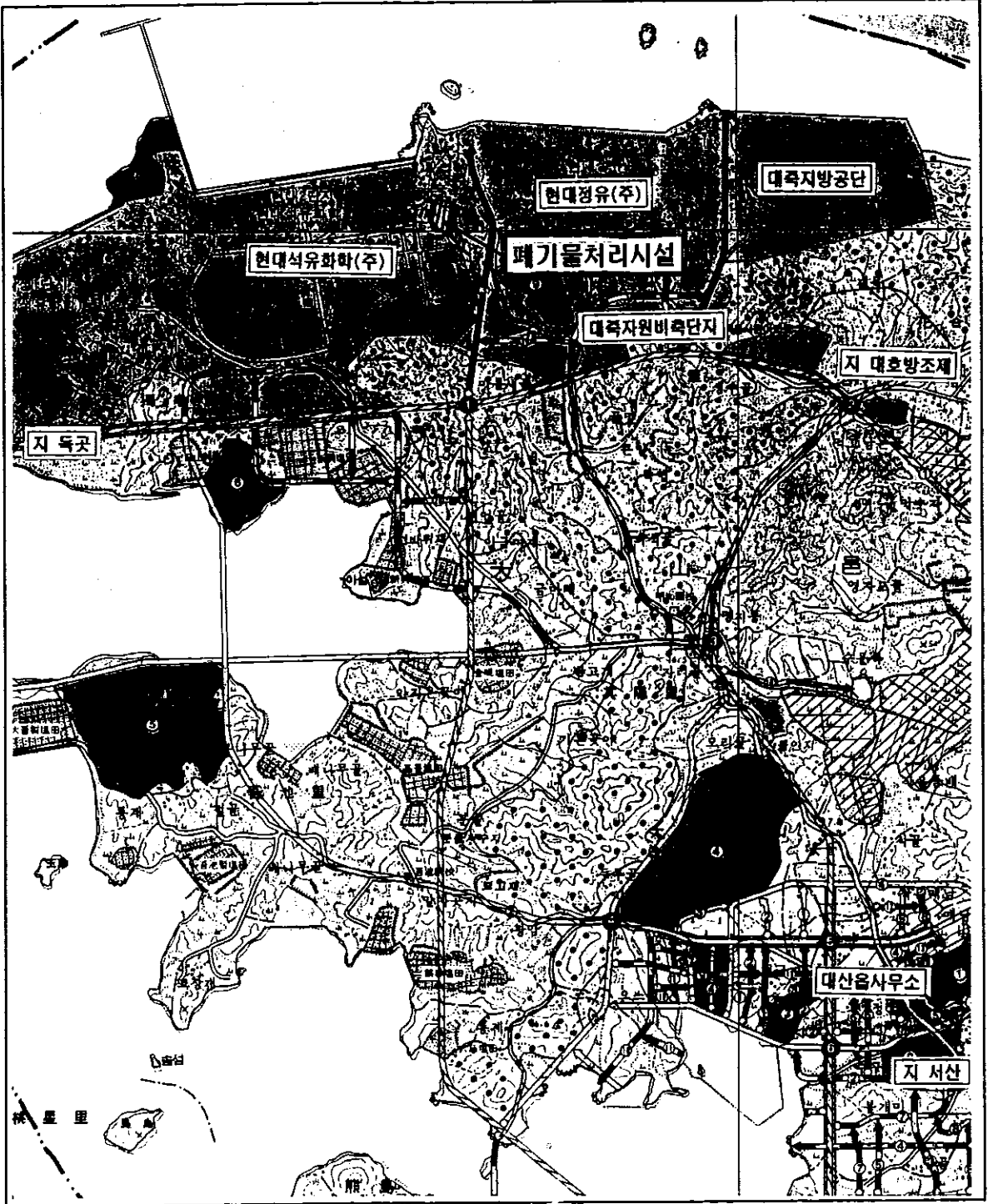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 결정내용 : 신설 1개소(면적 : 86,469㎡)  
※ 세부 내용은 따로 붙임 조서와 같음

## □ 근 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위 치 도

S = 1:50,000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폐 기 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매 립 장)	서산시 대신읍 대죽리 일원	-	증 86,469	86,469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폐기물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구분 : 신설</li> <li>• 면적 : 86,469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매립장이 매립용량 초과등으로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를 위해 신설코자 함</li> </ul>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안)

S = 15,000

